##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17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 강대식 · 조지연 · 김선교

최은석 • 유용원 • 서명옥

고동진 · 강선영 · 배준영

김장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어해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퇴거의 강제 등) (생 략)	제7조(퇴거의 강제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		
	<u>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u>		
	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u> 따른다.</u>		